
第9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7年6月9日(月) 午前10時

場所 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技術審議官所管主要事務推進現況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技術審議官所管主要事務推進現況報告의件 ... 2面

(10時 39分 開議)

○委員長 朴相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臨時會 제1차 建設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洪善光 技術審議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同僚委員님께 委員長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회기간중 우리 建設委員會의 成聖鏞 委員님께서서는 우리 市議會와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議會를 우리 市議會 친선방문대표단의 일원으로서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오셨으며, 張夏雲
위원께서도 호주의 뉴캐슬시 주체의 국제환경세미나에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오셨으며,
방문기간중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豫算決算特
別委員會 33분의 委員 中 우리 委員會에서 池龍鎬 委員님,
白南善 委員님, 成聖鏞 委員님, 李子源 委員님, 張夏雲 委員
님, 鄭在天 委員님, 車星煥 委員님 이상 일곱 분이나 참가하
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축하할 일은 우리 委員會의 閔鍊植 委員께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海外交流增進特別委員會 委員長으로 선
출되시어 서울市議會 해외교류활동의 선봉에서 중책을 수행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委員會의 위상이 議會 內에서 그만
큼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委員長으로서 매우 자랑
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더욱 더 큰 일을 위하여 同僚委員들간에 격려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委員長인 저 자신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번 臨時會 기
간 중에도 여러 委員님들의 변함 없는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
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技術審議官所管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로서 技術審議官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답
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技術審議官所管主要業務推進現況報告의件

(10時 43分)

○委員長 朴相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技術審議官所管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洪善光 技術審議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안녕하십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朴相根 委員長님과 建設委員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技術審議官所管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제94회 臨時會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1/4분기 동안의 실적은 제외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처리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委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技術審議官所管主要業務推進現況報告

(뒤에 실음)

.....

이상 技術審議官所管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相根; 技術審議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技術審議官所管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委員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0時 51分 會議中止)

(11時 01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相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池龍鎬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池龍鎬 委員; 기타공사가 있는데요. 기타공사는 긴급하거나 국가보안에 관계되는 경우와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예상되어 터키공사로 발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공사이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池龍鎬 委員; 기타공사는 이런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의 변경 등 이런 것은 납득이 가는데, 긴급하거나 국가보안에 관계되는 경우다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의미가? 또 이런 예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기타공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발주부서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기타공사라고 하고, 그 나머지 대안입찰과 설계·시공일괄입찰은 발주부서가, 대안입찰은 발주부서가 설계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더 좋은 안이 施工社에 있으면 제안을 하는 것이고, 설계·시공일괄입찰은 설계서가 없이 施工社가 설계서까지 꾸며서 입찰에 참가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급하거나 국가보안에 관계되는 경우라면 施工社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려면 자료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에다가 설계를 맡기게 되면 그 사람만 현장에 들어가면 되는데, 입찰을 해서 여러 사람이 보안에 관계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군 공사라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池龍鎬 委員;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해서 技術審議官室에서 심의를 한 예가 있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보안에 관해서 한 것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池龍鎬 委員; 그러면 이렇게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예상되어서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 없는 사유 이외에 긴급공사하거나 국가보안에 관계되는 경우를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 경우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또 이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례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긴급하거나 국가보안에 해당해서 심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池龍鎬 委員; 技術審議官께서 부임하신 다음에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技術審議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池龍鎬 委員; 최근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술용역 발주전의 심의내역에 보면, 강변도시고속도로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이것이 道路局에서 요청했는데 4월 10일에 심의해서 재심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도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江西建設管理事業所 신축공사 기본설계는 5월 9일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안 되면 준비하셨다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池龍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相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魯泰塾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魯泰塾委員 ; 18쪽을 보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 심의결과를 보니까 1등이 한진건설인데, 이 86.7이 점수입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魯泰塾 委員; 2등 두산건설, 3등 동부, 4등 삼성물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점수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적격심의 1건 해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1등, 2등, 3등, 이러한 점수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내역표를 보니까 197쪽에 입찰방법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절반정도는 대안입찰으로 심의결과가 나왔고, 절반정도는 일괄입찰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9호선 9-1공구인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1,800억인데 대안입찰로 심의결과가 결정됐고, 지하철 9-4공구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1,050억인데 일괄입찰이 심

의결과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공구는 대안입찰이 나왔고, 9-4공구 경우에는 일괄입찰로 나왔는지 심의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相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庚燁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庚燁 委員;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를 심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승인을 하는데 설계도면이 시공중에 자주 변경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 설계변경을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변경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설계변경이라면 중요한 설계변경이 있고,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는데, 경미한 설계변경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설계변경은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閔庚燁 委員; 보통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설계변경이 한 공사당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통계는 정확하게 내보지 않았지만 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보다 횟수가 좀 많고요, 토목같은 경우는 횟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閔庚燁 委員; 그런데 중요한 부분의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당초 설계도면을 심의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충실하게 심의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발주부서의 공

사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서 설계변경하는 예도 있고요.

○閔庚燁 委員; 흔히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 동안 건설 시공사의 관행상 소위 공사비를 인상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서 왕왕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주처라든가 시공사의 관계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사항을 파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지금 단계에서 저희 技術審議官室 입장에서는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또 그렇게 시공사들한테 공사비를 부당하게 올려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요즘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閔庚燁 委員; 그렇게 없다고 자부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나라 건설업계의 관행상 시공사들의 그러한 행태가 현재 비일비재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할 때 우리 審議官께서는 각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相根; 閔庚燁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在天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在天 委員; 방금 閔庚燁 委員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技術審議官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기술심의 용역에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심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시공을 맡기는데, 특히 북부도시고속도로만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2공구나 3공구, 이 두 군데만 보더라도 설계변경 횟수가 14회, 보통 8회에서 14회까지 됩니다. 그리고 40% 내지 45%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기타 공사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기술심의를 할 당시에 용역에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분명히 거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는 재심의를 해서 완벽한 심의를 거친 이후에 발주를 하도록 해서 시공사쪽에 공사를 맡기는데, 이렇게 공사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기술심의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술심의를 완벽하게 해 냈다고 한다면 공사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질조사라든가 또는 주변환경에 어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技術審議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을 잘못 해 냈기 때문에 결국은 설계변경요인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기술 심의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북부도시고속도로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공사,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지하철공사는 40여 회까지 설계 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技術審議官의 역할이 뭐니까? 그런 설계변경요인들을 제거하고 서울시 건설부분에서는 기술이 가장 앞서가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鄭在天 委員; 그런데 技術審議官 하는 역할이 뭐니까? 수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금액을 증액시키고, 공법을 변경하고, 이런 것 그대로 방치할 바에야 기술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技術審議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

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아까 보고하셨는데 대안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는 발주자가 제시한 공법보다 시공자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더 우수한 공법을 제시했을 경우에 심의에서 12건 심의했다고 했어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鄭在天 委員;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는,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에서는 기술이 아마 뒤떨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技術審議官쪽에서는 서울시의 기술부분을 가장 선두하는 부서예요.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鄭在天 委員; 그렇다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어떤 공법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입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법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한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입찰방법으로 한다고 지금 서울시가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技術審議官으로서는 지금 시공사보다 기술을 더 앞서가고 선도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선진적 기술을 개발해서 발주청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공사가 더 나은, 앞서가는 공법을 제시해 가지고 서울시를 완전히 농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요. 서울시 능력의 한계가 이 정도냐,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技術審議官의 입장은 어때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안입찰이나, 턴키나, 기타공사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사에 대한 설계방식에서 차등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公務員이 공사발주하는 데에 설계서를 만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公務員들은 많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 技術審議官室의 직원들이나 저도 역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외부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 되는데, 그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대안입찰이라는 경우는 일정 설계소에서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방식이고, 설계한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설계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식에서 실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해 주는 것이고, 그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시공사에서 선진적인 공법이라든가 이런 건설기술을 개발해서 나가고 있으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技術審議官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먼저 개발해 놓은 공법이라든가 건설기술을 터득해서 자신있게 技術審議官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맡길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施工社가 가자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요. 설계변경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施工社보다 건설기술이 뒤지기 때문에 끌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북부도시고속도로 현

장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에도 나오는데 監理團長한테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답변이 있었어요. 施工社쪽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해 오는데 監理團長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인데 요청해 온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청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니 증액을 목적으로 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런 점을 보더라도 施工社에서는 공사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확보한 건설기술·공법 이런 것을 서울시 발주처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더 앞서가니까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서울시 發注處로서는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技術審議官에서는 보다 앞서가는 건설기술을 개발해서, 또 일반 施工社들이 채택하고 있는 건설기술을 터득해서 완전히 소화해 내야 된다고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施工社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검증을 다 못하고 있지만 너무 엄청난 부분에서 공사비 증액발생 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技術審議官의 책임이 큼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技術審議官은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서 지금 무조건 설계기술면에서 외부용역결과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技術審議官은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입장이 못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하면 더 보장을 해서라도 施工社의 건설기술보다는 뒤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것은 기구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鄭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도록 연구·노력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어렵겠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쉽게 조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사항은 技術審議官室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제 공사를 발주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술인력현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鄭在天 委員; 기술심의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서류를 넘겨 주었어요, 發注處에다가. 넘겨주었으면 공사진행과정까지도 기술심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심의가 잘못되었으니까 설계변경하고,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회 이상 13회까지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연장이 2년씩이나 돼서 물가변동률이 어떻게 적용이 된 줄 아세요? 1,000억원 공사면 보통 8·90억원 증액이 됩니다.

技術審議官님이 이것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 증액한 것 뿐 아니라 물가변동률에 의한 적용도 技術審議官 책임이에요. 공기연장이 보통 북부도시고속도로는 2년 정도 됐어요. 2년이면 1공구당 150억 원에서 180억원 이런 정도의 물가변동률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증액이에요. 3년 이내에 해낼 수 있는 것을 기술심의회할 당시에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8회 내지 14회 하면서 공기가 2년 정도 연장이 되고, 그래서 물가변동률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공구에 150억원 내지 180억원이 증액된다면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하철공사 부분은 더 커요. 지금 建設安全管理本部所管에서만 적어도 2,500억원 이상이 증액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서. 지하철공사까지 합하면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무리하게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심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물론 기술심의를 여러 건 하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지금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안 자체가 기술심의에서 걸러질 사안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술 외적인 문제에서 오는 현장, 예를 들어서.....

○鄭在天 委員; 기술 외적인 민원문제 같은 것도 기술심의에서 분명히 검토대상 아닙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도 기술심의에서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거기까지 하려면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것은 바로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鄭在天 委員; 기술 외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해요. 현재 입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법변경 사례가 적지 않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질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技術審議官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다 이말입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이전에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발주부서가 공법이라든

가, 사업계획의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 오면 설계내용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지.....

○鄭在天 委員; 아니, 잠깐만요. 技術審議官이 설계내용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요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鄭在天 委員; 기술심의를 하면서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지질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기술심의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도면 옆에 갖다가 놓지 않고 기술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자료 없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자료를 다 받아서 審議委員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서 審議委員들이 그 자리에서 본다고 확인될 사항이 아니고요. 일주일 내지 열흘 이상 그 도면을 보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된 것을 메모해 와서 거기에서 토론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러면 지질조사 자료도 분석을 해서 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지질 전문가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심의를 하게 되면 분야별로 지질에 대한 전문가, 아니면 지질에 대한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 해서 요소 요소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鄭在天 委員; 그런데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를 보면 弘恩洞에서 平倉洞까지 공사구간이란 말이에요. 개천을 따라서 교각이 설치가 되는데 지질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지질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심의 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질조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아까 지질조사를 상당히 짧은 구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을 설계비에다가 많이 투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1km에서 지질조사를 1개 구멍을 할 것이냐, 10개 구멍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와 설계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평상시 1km에 2개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방향이라면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리고, 나머지 어떤 변동사항이 온다면 그것은 설계변경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 싸게 들어간다고 보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전부 촘촘히 구멍을 다 뚫어서 확인을 하려면 설계에 걸리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설계변경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안도 있는 것입니다.

○鄭在天 委員;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넘겨주면서 비용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각을 설치하는데 지질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지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렇지요.

○鄭在天 委員; 똑같다면 한 군데만 해서 그것만 적용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전 구간의 지질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각

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지질조사를 전부 해야 되는데 비용 걱정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에다가 떠 넘긴다는 것입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교각의 경우에는 촘촘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일반도로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사성격에 따라서 지질조사의 방법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鄭在天 委員; 그러니까 기술심의를 할 당시에 교각이 10개가 있으면 2개만 하지 말고, 지금 2개만 해서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교각에서 2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각의 경우에는 가급적 많이 해야지요.

○鄭在天 委員;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각의 숫자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갑자기 공사하다가 지질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공기가 2·3개월 늦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이 공기연장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라도 技術審議官이 비용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걱정해서 일부 설계변경 요인으로 잡아주고, 넘겨 줄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기술심의를 해서 넘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심의하고, 보완요청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재심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鄭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이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우리가 기술심의를 참고를 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리고 建設技術審議委員이 지금 한 250여명 구성되어 있잖아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그렇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분들은 우리 서울시 公務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技術審議官室에 公務員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보하고, 아주 전문성 있는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요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술심의 당시에 와서 자문만 할 따름이지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믿고 우리가 서울시 기술심의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技術審議官의 역량을 대폭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市長한테 건의할 생각은 있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오는 득보다는 아까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技術審議官室에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서울시에 득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지금 분야별로 기술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公務員들은 몇 분이나 참여를 합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보통 3·40%가 참여를 합니다.

○鄭在天 委員; 3·40% 참여를 하는데 建設技術審議委員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주도는 公務員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이 해야 할 거예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러니까 누가 주도한다기보다는 그 委員들 중에서 어떤 지질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

면 다른 구조물이 잘못되었다고 한두 분이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토의식으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리고 기술심의를 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심의 지시를 해서 의뢰를 한 發注處에 다시 넘겨주면 거기에서 다시 재심의가 올라오면 또 보완조치를 하도록 조건부채택을 해서 넘겨주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보완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하고 넘어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鄭在天 委員; 그것 확인하는 근거 있어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委員님들별로 보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에 수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委員이 확인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鄭在天 委員;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도 설계변경 요인들을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면 기술심의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보완을 하도록 해서 넘겨주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깐 그것은 기술심의를 잘못된 것 아니냐?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되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인 이상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실수라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리고 건설자재시험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 1월에 조례개정이 돼서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

험의 적정성 확인과 검사시험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鄭在天 委員; 의무화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가 현재 200여개인데, 200여개 공사 중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이나 검사시험을 技術審議官쪽에다가 의뢰를 하지요, 建設資材試驗所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0여 공사가 다 의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30억 이상 발주한 공사가 200여개인데 지금 200여개 공사내용 확보하고 있느냐구요.

○建設試驗所 品質指導課長 朴亨根; 발주부서에서 의뢰요청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요청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규정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建設試驗所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발주공사 30억 이상짜리 몇 개인데 어느 부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할이 副市長이니까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정하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자료가 정리돼 있어야죠. 副市長한테 무엇을 보고하는 거예요. 자재시험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합니까?

○委員長 朴相根; 建設試驗所長님 안 나왔어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所長이 지금 몸이 불편하고, 다른 사건이 있어서 지금 공석입니다.

○委員長 朴相根;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재시험한 그 실적이 있어요?

○建設試驗所 品質指導課長 朴亨根; 네,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실적이 있는데, 어느 부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의뢰하지 않았는가. 매년초에 서울시가 발주하는 30억 이상 공사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그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建設試驗所에서는 정리를 해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부서, 어떤 공사에서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하지 않았다, 안 했으니까 副市長한테 보고를 해서 안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확보도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建設試驗所에서 확인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鄭委員님께서.....

○鄭在天 委員; 정리를 해 두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들어오는 것은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들어온 것만 하고, 그렇다면 副市長한테 보고할 때 무엇을 보고합니까? 시험한 내용만 보고를 합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적정성 검사를 한 실적을 분기별로.....

○鄭在天 委員; 실적만 할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줘야만이.....

○技術審議官 洪善光;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建設試驗所에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鄭在天 委員; 확인하는 기관은 아니지만은.....

○技術審議官 洪善光;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鄭在天 委員; 그리고 建設委員會에도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建設試驗所에서는 97년도에 30억 이상 발주공사가 몇 개인데 몇 개 공사중에서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몇 건 해왔다, 안한 공사는 이런 부서의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建設委員들이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쯤은 해야지.

○技術審議官 洪善光; 5월 30일 현재 200개 현장 중에서 52개 현장이 실시가 됐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러면 150개 현장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建設試驗所에서는 매년도에 서울시가 3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3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발주공사의 내용을 정리해 두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매월 建設委員會에 보고를 해요, 副市長한테 안 하려면.

그래서 보고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느 부서, 어떤 공사에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왜 안 하느냐고 따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죄송합니다. 지금 鄭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는 결론이 안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相根; 技術審議官님, 지금 우리 鄭在天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심의에 대한 형식적인 심의를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꼬아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험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鄭在天 委員; 시험문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97년도에 200여개 있으니, 지금이 자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97년 1월 17일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깐 관련부서인 建設試驗所에서는 서울시가 금년에 30억 이상의 발주공사가 몇개 있다고 돼 있으니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확보해 놓고 의뢰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깐 안 한다는 말이 안되지 않아요.

○建設試驗所 品質指導課長 朴亨根; 대상공사를 받아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으면서 52건은 한꺼번에 200건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副市長님한테까지 심사분석을.....

○鄭在天 委員; 그러면 연초에 의뢰받아 왔어요?

○建設試驗所 品質指導課長 朴亨根; 연초에 의뢰를 받아냈고, 안 들어 온 데 대해서는.....

○技術審議官 洪善光; 전부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建設試驗所 品質指導課長 朴亨根;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온 것 委員會에 보

고해 주라는 겁니다. 안 들어온 부서, 안 들어온 공사.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것을 하라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전체적인 이해가 서로 잘못된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독촉하고 이러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鄭在天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朴相根; 鄭在天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子源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子源 委員; 방금 鄭在天 委員께서 얘기한 가운데 미발주의된 공사, 기술심의를 아예 의뢰하지 않은 공사, 규정에 총 공사비가 30억 이상으로 돼 있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李子源 委員; 그 다음에 토목하고 도시계획분야는 1억원 이상으로 돼 있고?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李子源 委員; 그렇다면 현재 麻浦區 上岩洞에 있는 난지도 쓰레기하치장 안정화사업 계획이 2000년 12월 30일까지 6개 회사가 1,278억원의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技術審議官은 알고 계시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공사 전반에 관해서는 제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李子源 委員; 이 기간동안에 6개 회사가 1,278억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구체적인 내용은.....

○李子源 委員;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李子源 委員; 기술용역발주 심의내역에 보면 작년도, 금년도에도 입찰안내서 심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 설계적격심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총 공사비 30억 이상 건설공사비로 되어 있다면, 난지도 안정화사업 공사는 어떻게 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심의 의뢰를 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확인해 보니까 난지도 안정화사업 공사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 建設部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그런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李子源 委員;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環境管理室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예산과 용역범위를 建設安全管理本部에 의뢰를 했는데.

○技術審議官 洪善光; 공사규모에 따라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하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 심의위원회가 분류됩니다.

○李子源 委員; 그것을 建設部에서 시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200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96년 이전까지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李子源 委員; 서울시 環境管理室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용역을 줘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시켜서, 조달본부 경쟁입찰로, 공사는 建設安全管理本部가 행정감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심의는 법에 의해서.....

○李子源 委員;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나요. 서울시 공사고, 서울시

예산이고, 서울시 감독청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당치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區廳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30억 이상의 공사는 서울시로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규모 이상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 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李子源 委員; 그런데 서울시 공사에 서울시가 감독관청으로 있고 발주도 서울시가 했어요. 예산도 서울시 예산인데, 다만 입찰만 조달본부에서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審議官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입찰안내 심의를 審議官이 했어야 되고, 타당성 여부, 설계채택 심의도 技術審議官이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 업무가 지금까지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업무였었는데 점점 이관이 되고 있는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아까 서남권 채점 매기는 방법도 금년에 우리가 처음 했고요, 입찰안내서도 금년도에 하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전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李子源 委員;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하네. 난지도 쓰레기 안정화사업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나 모든 행정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데 왜 중앙정부가 그것을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서울시 돈을 쓰더라도 그 규모가 크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李子源 委員;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규모에 따라서 위임사무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규모에 의해서 서울시보다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능력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들도 저희는 250명인데 거기는 450명 내지 500여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李子源 委員; 도저히 지금 技術審議官의 설명이 本委員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아요. 발주심의 의뢰를 당초에 하지 않은 것이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쳐서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 가게 되면 內務部를 통해서 가게 돼 있었습시다.

○李子源 委員; 建設安全管理本部가 環境管理室이나 둘 중에서 입찰심의 의뢰를 技術審議官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環境管理室이나 建設安全管理本部나 둘 중에 한 부서가 內務部에 해 가지고 內務部에서 建設部로 가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 갔습시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委員長 朴相根;李子源 委員님, 이해를 잘 못하는데 200억 원 이상 공사는 中央建設審議委員會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委員長 朴相根;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잘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시다. 죄송합니다.

○李子源 委員; 네, 알았습시다.

○委員長 朴相根; 李子源 委員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白南善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南善 委員; 白南善 委員입니다.

우리 同僚委員님들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의문이 나고 그 동안 기술용역발주전 심의를 죽 해 왔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1차적으로 6월 30일에 개통이 되지요, 전면?

○技術審議官 洪善光; 부분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白南善 委員; 부분적으로 3·4공구가 개통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성산대교 있는 데서 한강대교 그 부분은 다 되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白南善 委員; 언제 기술심의를 했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技術審議官 洪善光; 확인을 해서.....

○白南善 委員; 아니, 지금 技術審議官은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다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기 보면 강변도시고속도로 재심의를 4월 10일에 했습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白南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재심의를 했던 것이고 처음에 강변도시고속도로를 최초로 심의를 했을텐데 그것을 언제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이 부분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11페이지에 11번 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白南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최초에 강변도시고속도로를 착공했지 않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상당히 오래 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白南善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아마 89년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다시 차선을 하나 늘린다든지 이런 내용 아납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白南善 委員; 그러면 처음 계획을 몇 년도에 했어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답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白南善 委員; 그래서 죽 자료를 보니까 93년도에 재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로 아납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순환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白南善 委員; 강변에 있는 고속도로, 맞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재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말이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白南善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이 도로는 강변북로에 고가로 가는 도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고가로 가는 도로이고, 그 밑에 있는 강변북로에 있는 도로를 4차선이던 것을 다시 4차선을 넓히는 작업을 해서.....

○白南善 委員;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원래 계획했던 것이 여러 가지 순환하는데 부족하니까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묻기 위해서 그것이 언제 착공이 되었고, 뭐가 어려우니까 재심의를 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지 못하니까 문답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技術審議官이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부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십니다.

李子源 委員 질의할 때도 보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들이 질의를 잘못 해서 그렇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白南善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변 순환고속도로의 착공이 언제 되었느냐 하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했지요? 좋아요. 오래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했다. 그래서 언제부터 착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기존도로를 고속도로화해서 당분간 사용할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白南善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끝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구체적인 날짜는 결정된 바가 없고요. 지금 그 공사를 해야 옳으냐, 안해야 옳으냐 하는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올라와 있는데 재심의를 된 것입니다.

○白南善 委員; 재심의에 걸렸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 白南善 委員; 그러면 재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技術審議官 洪善光; 재심의해서 조건부통과가 됐습니다.
- 白南善 委員; 그리고 이제 道路局에서 언제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 技術審議官 洪善光;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 白南善 委員; 타당성에 대한 기술심의만 하셨다는 것이지요?
-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용역을 주라고 우리가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 白南善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의를 처음에 언제 하고, 그 순환고속도로 상행선은 심의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 李子源 委員; 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技術審議官 보고가 잘못되고 있어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억원 내지 200억원 이렇게 하고, 200억원 이상 가로 해서 中央建設審議委員會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표시를 해야지요.
- 여기에 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얼마든지 서울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든지 본단 말이에요.
-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것이 금년부터 시행된다고 요전 업무 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안인데요.
- 李子源 委員; 그러면 새로 변경된 것을 알려주어야지요.
- 技術審議官 洪善光; 죄송합니다.
- 李子源 委員; 내가 전반기에도 建設委員會에 있었지만 그

소리는 못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100억원 이상이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나와 있으니 그렇게 알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相根; 技術審議官님, 아까 池龍鎬 委員님과 魯泰塾 委員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조금 자료를 준비했다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相根; 그러면 張夏雲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夏雲 委員; 張夏雲 委員입니다.

지금 보면 기술심의 관련해서 갑론을박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技術審議官의 권한이랄까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부족함 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의 미비함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市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 한편으로는 技術審議官은 강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심의사항의 사후 관리라고 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심의가 끝나고 나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시공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된 내용을 市長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지금까지 建設技術審議委員會에서 평가단을 구성한 적이 있는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계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張夏雲 委員;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결과를 市長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실시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張夏雲 委員; 기술심의결과가 사후관리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평가단이 필요한 것인데, 가령 최근 副市長團과 더불어서 局長 이상들이 각 대형건설현장을 가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가령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과 그 다음에 副市長團이 각 건설현장을 돌면서 지적한 사항이 일치된 적도 있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일치된 적도 있지만 평가단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설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져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일치될 수도 있지만 일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張夏雲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단을 구성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측면에서 인원의 부족이라든지 공사현장이 많으니까 다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100%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張夏雲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建設技術審議委員會를 총괄하고 있는 技術審議官의 자격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가령, 우리 부실공사의 전형적인 것이 부실설계에서부터 시작되고 부실시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鄭在天 委員도 심각하게 지적했던 여러 가지 설계변경, 이런 과정으로 일관해서 부실시공과 공사비 증액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技術審議官의 입장에서 技術審議委員會라는 것을 작동시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技術審議委員會를 구성하고 있는 技術審議委員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내로라하는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技術審議官이 답변하면서 시공회사보다도 기술수준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회사에서 실제로 능력있는 사람이 技術審議委員會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아까 설명드린 과정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張夏雲 委員; 公務員들뿐만 아니라 지금 技術審議官이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은, 技術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은 副市長이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副委員長은 技術審議

官이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技術審議官이 사실은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副市長이 얼마 옹니까, 거의 안 오죠. 그렇다면 그런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자기 임무를 해 내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아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張夏雲 委員;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좀더 확인해 봐야 될테니까, 평가단을 구성해서 작년에 했던 평가결과와 市長한테 보고한 내용과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가를, 사후조치 어떻게 했는가 확인합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그 확인한 결과를 자료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세요.

그 다음에 입찰방법 심의내용중에 보면, 4월 9일 지하철 9호선 9-1공구부터 9-21공구, 그리고 3호선 연결구간 3-1공구까지 전체적으로 입찰방법 심의를 다 했군요. 다른 건수는 없고 그날은 주로 이런 것과 남산하고 해서 33건을 했는데, 심의결과가 대안입찰, 일괄입찰, 대안입찰, 이렇게 해서 공구마다 다 틀리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공구마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도를 봤습니다. 공구마다 특성이 있어서 이것은 대안입찰이 가능하다, 이것은 일괄입찰을 해야 된다는 이런 평가들이 내려져서 했을 텐데 이에 대해 9-1공구는 대안입찰해야 된다고 9-2공구도 대안입찰 해야 된다고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審議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고 한 건 한 건의 답변결과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

○張夏雲 委員; 그러니까 9-1공구는 대안입찰로 해야 되는데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제시한 공법보다 시공자가 기술개발을 통해 더 우수한 공법의 제시가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어디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계획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자유롭게 놔두자는 이런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를 도출한 9호선 전체로 해서 총 21개 구간에 대해서 그날 하루에 다 했으니까 그날 하루에 다한 대안입찰이냐, 턴키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결과와 집행계획서라고 하나요, 본래 계획서 세울 때?

○技術審議官 洪善光; 사업계획 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張夏雲 委員;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입안한 계획, 공구별로 집행부에서 입안할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張夏雲 委員; 일반적으로 이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말입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발주부서에 계획이 있죠.

○張夏雲 委員; 그 계획을 놓고 평가한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놓고 어떤 식으로 입찰해야 되겠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사본을 주세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 계획서가 한 장에 여러 건 같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받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張夏雲 委員; 이 구체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相根, 池龍鎬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池龍鎬; 張夏雲 委員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魯泰塾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魯泰塾 委員; 張夏雲 委員이 질의하기 전에 비슷한 얘기를 내가 한 것같은데 덧붙여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4월 9일에 심의한 것이 지하철 9호선 1공구에서 21공구까지 21건, 3호선 연장구간 3-1공구 해 가지고 22건인데, 22건 중에서 심의결과가 대안입찰 12개, 일괄입찰 1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심의였어요. 공사금액만 해도 큰 것은 2,000억에 가깝고 이러한 사항인데, 이러한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는 물론 상당히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기라 할지, 안전성, 품질문제, 거기에 따른 공사비, 어떤 공법을 채택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인데 B라는 공법을 채택할 때는 500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정해 놓고 대안입찰가입니다, 또는 일괄입찰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審議委員들이 아주 진지하게 논란과 논의도 하고, 각종 자료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대안입찰이다, 일괄입찰이다 결론이 나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단 하루에 수조원에 가까운 공사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조 내지 2조가 되겠는데 이런 것을 4월 9일 하루에 이 중요한 것을 심의 결론을 내버렸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張夏雲 委員도 얘기를 했지만 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그날 심의한 22개 중에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여기에 대한 그날 회의에서 나왔던 審議委員들의 문제제기, 합의 도출 과정,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車星煥 委員; 속기록 있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속기록이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원래?

○技術審議官 洪善光;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鄭在天 委員; 委員會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魯泰塾 委員; 잠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안입찰로 하는 경우와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사비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품질은 품질이고, 공기도 마찬가지로요.

때문에 졸속심의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2조원에 가까운 공사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2건을 심의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건에 대한 審議委員들의 의견개선사항, 문제 제기했던 부분, 합의 도출 과정,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바로 못하면 약식 요약보고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심층분석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요약보고서라도 작성했다면 전체 22건을 각 委員들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委員長代理 池龍鎬; 네, 張夏雲 委員님.

- 張夏雲 委員;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과업이 시행돼죠?
-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 張夏雲 委員; 9호선 전체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 技術審議官 洪善光;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張夏雲 委員; 9호선이요.
-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것은 용역 시작할 때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용역방법에 대해서 과업지시서가 아직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대안입찰로 갈 것이냐, 턴키로 갈 것이냐, 기타 공사로 갈 것이냐,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과업지시서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張夏雲 委員;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 말씀하신 것은 기본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그렇죠. 아무 것도 없이 몇km 구간에 공사비가 얼마인가, 이것은 대략식 공사로서 어느 구간까지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심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 張夏雲 委員; 그러면 처음에 제시됐던 그것은 있다는 말이죠?
-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렇죠, 공사의 간략한 개요는 있어도 더 이상의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 張夏雲 委員; 그러면 명료치 않아서 문질겠습니다. 건설기술 용역 발주전 심의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해서 입찰방법 심의와는 순서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 技術審議官 洪善光; 입찰방법이 맨 먼저 진행이 되는 겁니

다.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개요만 가지고 연초에, 원칙적으로 연초에 하게 돼 있습니다. 1월에 하게 돼 있는데 편의상 늦어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과거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1월에 하지 않으면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직접 심사를 하기 때문에 1월이 아니더라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張夏雲 委員; 그러면 입찰방법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기술용역 발주전 심의를 합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공사가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계 개요와 발주전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도 저희들한테 발주전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張夏雲 委員; 그리고나서는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 다음에 설계가 발주되게 되면 기본설계든, 아니면 실시설계든 중간에 한 번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張夏雲 委員; 그러면 지금 당장은 9호선 관련해서는.....

○技術審議官 洪善光; 9호선 관계는 9호선을 이리이러한 방향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張夏雲 委員; 그러면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용역심의 이런 것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말이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그러면 가령 지금 9호선과 관련해서 한 것은 노선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技術審議官 洪善光; 노선의 타당성도 아니고요. 발주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張夏雲 委員; 아니, 지금 실제로 建設技術審議委員會에서 하는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지금 9호선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일을 진행시키고 있느냐를 볼 때 노선만 우선 확정해 놓고 그 이상은 없다 이말이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획과 입찰방법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회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白南善 委員; 나는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흥분을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그러면 白南善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南善 委員; 아까 本委員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일 의문나는 것은 지금 中央政府에서 地方政府로 이관하면서 중앙에서 하던 것도 서울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白南善 委員; 아까 말씀드린 강변도시고속도로 그것도 당초 中央政府에서 심의를 했지 않느냐? 설계나 모든 용역도 中央政府에서 관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80년도에 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 技術審議官께서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어서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白南善 委員; 그리고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보다도 서울시의 교통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역시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보완하는 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강북에서 준고속도로니까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 특히 이번에 하는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사이 확장공사를 재심의 했는데, 좋아요 아까 죽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재심의를 했을텐데 그런 내역을 죽 처음부터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네, 白南善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尹福永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福永 委員; 尹福永 委員입니다.

우리 技術審議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심의를 의뢰하는 部署長들의 직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道路局長이 2급입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2급 내지 3급인데 현재 3급입니다.

○尹福永 委員; 현재 3급이고, 그 다음에 建設安全管理本部長이 1급이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尹福永 委員; 地下鐵建設本部長도 1급이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尹福永 委員; 그 다음에 모든 部署長들을 보면 지금 현재 技術審議官보다는 직급이 더 높습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그렇습니다.

○尹福永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技術審議官의 직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建設安全管理本部長이 건설기술심의를 올렸는데 과연 3급인 技術審議官이 그것을 재심의시킬 수 있느냐, 과연 제도적으로 봤을 때 없다라고 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아까도 우리 여러 委員님들이 지적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 技術審議官이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수시로 해서 몇 백억원 짜리 공사가 몇 천억원으로 변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저희 사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있지만 직급이 높으면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직급이 낮아서 할 일을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委員님들 지적하신 사안들을 전부 다 심의에 반영을 해서 내 보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그 사업을 결정하는 사업계획 결정 때 技術審議官室에서 참여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라면 직급이 높은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결정된 상황에서 설계심의를 들어가지만 사업결정되기 전에 그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직급이 더 높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尹福永 委員; 결론은 本委員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그렇습니다.

○尹福永 委員; 本委員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技術審議官室이 모든 것을 제대로 심의하려면 직급이 더 올라가야 되

지 않느냐, 本委員은 옛날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市長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직급에 대해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직급에 대해서 건의한 바는 없고, 업무에 관해서는 지금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이리이러한 영역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 아까 여러 委員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 技術審議官室의 한계점 이런 부분을 계속 도출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尹福永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방금도 技術審議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든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技術審議官도 참석을 해서 한다면 모든 것이 더 심도 있고,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90%에 가까운 계획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제도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직제에 관한 문제는.....

○尹福永 委員; 직제도 그렇고, 모든 현재 공사발주하기 전에 技術審議官님이 참석을 안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尹福永 委員;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市長한테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尹福永 委員;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자료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나름대로 업무의 새로운 영역도 집어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尹福永 委員; 그것이 대충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몇 개월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尹福永 委員; 아니, 그것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技術審議官 洪善光;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이 됐는데요. 현재의 업무내용은 분석이 됐는데, 기구라는 것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영역, 지금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영역을 만들어서 이론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작업들이 조금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尹福永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技術審議官님이 오시기 전에 前任 技術審議官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技術審議官이 부임한 지 6개월이 됐다고 하면 前任 技術審議官들은 뭐 했느냐 이말입니다. 진작에 그 技術審議官들도 이런 것을 느꼈을텐데 아직도 건의를 안했다는 것은.....

○技術審議官 洪善光; 상당히 많은 개선을 해 왔습니다.

○尹福永 委員; 진짜 개선을 해야 될 사안들이 안 됐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요. 그래서 아까 여러 委員님들도 이야기를 했듯이 왜 설계가 자주 변경이 되느냐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技術審議官도 동의를 하십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尹福永 委員;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技術審議官室에서 참여를 했더라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技術審議官은 빼버리고, 1·2급 局長들이 다 앉아서 확정해 놓고 技術審議官室로 올린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1급이 3급 技術審議官 불러서 이것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올린 것이니까 심의해 주시오 하면 그냥 하는 것이지, 이것 안 됩니다 하고 내려보낸 적이 없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심의는 별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尹福永 委員; 아니,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아까는 그렇다고 해 놓고 또 아니라고 그래요? 실제 前任 技術審議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시인을 해 놓고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고유권한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직급상으로 봤을 때 과연 技術審議官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아까 技術審議官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직급제도의 문제점 등 기타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달 걸려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달에라도 이것을 서울市長한테 건의를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市長한테 올리기 전에 모든 것이 작성이 되면 本委員한테 자료로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鄭在天 委員;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네.

○鄭在天 委員;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회에서 심의내용이 사업 시행부서에서 제출한 대형공사 집행계획서에 의해서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기타공사 등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심의기준이 발주자가 제시한 공법보다 시공자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더 우수한 공법의 제시가 가능한 공사다 했는데, 이 우수한 공법이라는 기준은 建設技術審議委員會에서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겠네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것은 입찰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대안입찰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공사가 이루어진다면 地下鐵建設本部에서 설계를 다 해서 이 공사비용이 얼마나 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냥 施工社들이 地下鐵建設本部에서 설계한 대로 금액을 써서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 천장을 이런 식으로 각을 주었는데 우리는 수평으로 하겠다 이래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사방법을 택하는 것은 공사 감독부서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루에 20건을 처리했던 것도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심의했던 22건은 분명히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입찰이냐, 아니면 턴키냐 이것을 우리 일반적인

지침대로 심의를 했고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대안입찰이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대안입찰로 공사가 된 것은 한 건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안입찰의 경우는 턴키와 같이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설계를 한 것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 되고, 기존에 설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본인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만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시공일괄입찰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로 하지 않고 기타공사로 가는 것이고, 이 경우에 아까 대안입찰은 사유지 통과에 대해서 보상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날 대안입찰로 채택된 것은 보상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설계 전반적인 것은 地下鐵建設本部가 책임을 지고 거기서 그 설계에 부분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타공사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에서 대안을 채택하게 됐느냐 하면 공사금액이 많은 공사,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턴키로 발주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턴키로 하는데 사유지 보상에 문제가 있는 10여개 공구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가겠다고 발주부서가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일괄입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하철 전체공사에 대해서 기타공사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鄭在天 委員; 대안입찰의 문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것은 시공사하고 유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張夏雲 委員이나 魯泰勳 委員이 회의록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회의록을 제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입찰을 결정할 때는 시공사쪽에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떤 대안을 제시했기에 대안입찰로 결정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技術審議委員들과 시공사쪽과 유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한 내용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대안입찰 방법만 결정했지 어떤 대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鄭在天 委員; 아니, 설계는 아니고 대안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안 나와 있겠죠. 그러면 技術審議官쪽에서 파악해 봤을 때 현재의 技術審議官의 기술능력 가지고는 이 부분은 어려운 공사다, 난공사 구간이겠다, 그러니까 턴키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기타방식으로도 안 되고 대안입찰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정하는 것 아니에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턴키로 가라, 이렇게 審議委員會에서도 유도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보상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鄭在天 委員;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가야만이 설계변경요인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대안입찰에 있어서 문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建設技術審議委員會 능력 가지고 技術審議委員들이 봐서, 이 부분 난공사일 것 같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대안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판정기준은 발주처가 제시한 내용, 이것과 비교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렇죠. 발주부서가 주장한 내용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鄭在天 委員; 그것을 시공사쪽에다 위임할 것이 아니라 技術審議委員會에서 발주처에 보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대안입찰로 가지 않고 턴키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技術審議委員會와 시공사쪽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를 떨어뜨려버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아직은 한 번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한 번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鄭在天 委員; 한 번 있었어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한 번 있었는데요, 아까 비리유착관계는 오히려 대안입찰관계가 설계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鄭在天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만,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아주 미미한 부분이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고, 아주 미미한 부분 가지고 대안입찰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만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기타공사와 마찬가지로 형식이 되는 겁니다.

○鄭在天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技術審議委員會 회의록이 아마 내용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대충 보면, 전문연구진들이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니까 審議委員會 회의록, 중요내용들을 제시한 委員들의 회의록을 요약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技術審議官 洪善光; 다른 심의는 審議委員님들의 의견을 전부 문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심의 기록이 필요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사발주 방법에 대해서 난별로 이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만 달게 돼 있지 구체적으로 토론 과정상에서의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鄭在天 委員; 이것이 諮問委員會의 자문에 의해서 응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기술심의를 해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향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될 것인데 그 諮問委員會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技術審議委員會는.

○技術審議官 洪善光; 일반 技術審議에 대해서는 전부 회의록이 아니고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제출한 문서가 있는데.....

○鄭在天 委員; 그러니까 道路復舊工事審議委員會도 회의록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어떤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 발언을 참고해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요약정리까지 나온다고요. 그런데 技術審議委員會에서 그런 근거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이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委員長代理 池龍鎬; 잠깐만요, 자꾸 회의가 공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審議官께서 말씀하신, 아까도 논란이 된 회의록 작성에 관한 부분은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 施行規則 제10조에 보면, 회의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委員會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회의록이 없다고 그러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기술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서류를 미리 열흘 내지 일주일 전에 보내드려서 거기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다 기록해 달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池龍鎬;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기 技術審議委員會條例 施行規則에 이렇게 돼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회의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견서를 직접 서류로 받기 때문에.....

○鄭在天 委員; 무슨 장난도 아니고, 技術審議委員會 아닙니까. 명칭이 委員會이고 회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技術審議諮問委員會라고 하든가.

○技術審議官 洪善光;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같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분야가 다른 여러분들을 모셔서 얘기하기 때문에 技術審議가 토론형식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鄭在天 委員;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서면으로 한 것을 굳이 회의록이라고 하면 회의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요.

○委員長代理 池龍鎬; 그러니까 어쨌든 施行規則에 회의록이라고 돼 있는데 말하자면, 審議官이 말하는 것은 지금 각 의견서를 회의록으로 같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의록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委員長代理 池龍鎬;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처음부터 없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그것을 회의록으로 본다고 볼 수 있으면.....

○技術審議官 洪善光; 일반적인 회의록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鄭在天 委員; 그 근거요지가 기술심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제시를 했는가, 이것을 근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이 회의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의견서 제출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리해 두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될 것인데 회의록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번복되고 자꾸 길어진다는 겁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죄송합니다.

○鄭在天 委員; 그러니까 그 의견 제시한 것을 제출해 주면 그것이 회의록으로 우리도 같음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지 누가 회의절차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審議官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회의에

보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별지 5호 서식에 의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임의적으로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추궁하니까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고, 설령 의견개진을 그렇게 했더라도 技術審議官室에서 그것을 요약해서라도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施行規則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거기에 규정을 해 놔요. 지금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칙은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委員長代理 池龍鎬; 지금 그것만 토론식으로 안 되니까 갈음한다는 특별조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래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해서 해야죠.

그런데 안 하고 여러 가지 각자 전문가들이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는데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委員들이 말씀하셨던 요지 자체가 대안입찰로 해서 결국은 용역과 관련된 많은 비용, 예산, 이런 것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회의록, 그날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회의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야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또 여러 가지 委員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技術審議

官이 하루에도 몇 건씩, 몇십 건씩 하다 보니까 委員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審議官께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도 물어보면, 이것은 규정상 이렇게 돼서 200억 이상 공사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됩니까라고 하면 될 것을 어떤 건들 보면 그 내용자체도 파악을 못하시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技術審議官 洪善光;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또 審議官께서 못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빨리 해서 해야지, 審議官 소관 업무자체가 우리 委員會에 온 지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委員님들도 審議官室에서 하는 업무의 정확한 이해와, 또 그에 따른 지적이 아주 정책적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委員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市의 중요한 공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의부터는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委員會에서도 어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委員長代理 池龍鎬; 아까 魯泰塾 委員님하고 本委員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技術審議官 洪善光; 魯委員님이 아까 지적하신 지하철의 입찰방법 심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철 22개 공구에 10개 공구는 대안입찰로, 나머지 공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입찰방법을 결정했는데 그 주요원인은 대안공사로 가게

되는 것은 사유지를 통과해서 보상이 상당히 많은 절차를 요하고, 또한 그 구간에 지장물이 많아서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공구를 대안입찰로 했고, 보상과 지장물 이설에 지장이 적은 부분은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기본취지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하라고 하니까 地下鐵建設本部側에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 터키를 전부 하기는 곤란하니까 10여개 공구에 대해서는 대안입찰로 해 달라는 간곡한 설명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魯泰塾 委員; 지금 技術審議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22개 공사 중에서 대안입찰, 여기 심의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시공자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더 우수한 공법의 제시가 가능한 공사, 이것을 가능하면 대안입찰로 하자는 원칙이었는데 技術審議官 설명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조금 예견되고, 지장물 이설부분이 있다고 해서 대안입찰로 유도를 했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地下鐵建設本部에서 10개 정도는 대안입찰로 해 주십사 하는 사전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技術審議官 洪善光;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기타공사로 가야 될 사안입니다.

○魯泰塾 委員; 제가 볼 때에는 대안입찰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무슨 측면에서 그러냐 하면, 첫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 공사비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는 터널 아납니까? 지하터널에 대한 공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근래에 신기술로 개발된 공법도 있고, 공기도 단축시키고 공사비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

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1공구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200억원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700억원, 또는 500억원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획기적인 공법이 나와서. 그러한 부분을 실제보다 앞서 地下鐵建設本部나 우리 技術審議官室에서 이리이러한 공법도 있으니까 상당히 공사비를 다운시킬 수 있고, 공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면 굳이 대안입찰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과업범위가 명확하니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설계과업을 줄 때도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사비에 있어서 엄청난 기복이 생길 소지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대안입찰로, 그 이유도 매우 애매하게 지장물 이설이나 보상문제 때문에 대안입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이 대안입찰로 결정한 10개 공구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기타공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政府側에서 가급적이면 턴키로 발주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절충하는 성격으로 대안입찰로 하게 된 것이고, 대안입찰에 대해서 委員님이 걱정하시는 부정이나 공사비 증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요.

어떤 부조리가 생긴다거나 공사금액이 증액되거나 계속 파격적으로 낮추어지는 그러한 돌발적인 사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우는 턴키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지, 대안입찰에서는 턴키와 기타공사의 중간단계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봅니다.

○魯泰塾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에요. 더

더욱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대안입찰은 1 건밖에 없었잖아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것은 입찰자들이 상당히 꺼리는 것입니다. 시공자들이 설계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설계 그 자체를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타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魯泰塾 委員; 여하튼 22개 공구에 대한 회의록이나 요약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알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개의 공구에 대해서 地下鐵建設本部에서 요청해서 대안입찰로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技術審議官室에서는 심의를 할 이유가 없겠네요? 地下鐵建設本部에서 요청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절차만 거치려고 한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아니, 대안입찰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큰 모순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鄭在天 委員; 그대로 10개 공구에 대해서 대안입찰로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심의 내용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술심의를 할 이유도 없이 發注處에서 요청하는 대로 10개 공구에 대해서는 대안입찰로 결정을 해 버렸으니까 심의내용이 없을 거예요. 심의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이 턴키라든가, 기타공사가 나와야 될텐데 요청한 그대로 대안입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기술심의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심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鄭在天 委員; 아니, 그러니까 發注處가 제출한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建設技術審議委員會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계획서에다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地下鐵建設本部에서 구두상으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아니, 계획서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관계나 지장물 이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터키가 아닌 대안입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보상문제와 대안입찰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보상이 지연되면 공기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일반 시가지 내에서 사유지 보상을 해주면서 설계를 해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기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공사로 많이 발주를 합니다.

○鄭在天 委員; 알았어요. 그런데 일단 發注處가 요청한 대로 기술심의를 해 준 것 자체가 發注處와 앞으로 施工社하고 유착관계는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경고성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네, 張夏雲 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張夏雲 委員;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령 어쩔 수 없이 이런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기본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순서가?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그러면 가령 지금 대안입찰로 해서 된 10개 공구는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기타공사의 절차를 밟아서 발주를 하면서 그 시공자가 설계내용 일부를 바꾸든, 전체를 바꾸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대안으로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면 저희들이 제시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기타공사와 턴키의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張夏雲 委員; 그러면 기술 외적인 측면은 제외시켜 놓고, 턴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외적인 측면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어느 공사든지 기술 외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발주방법을 결정합니다.

○張夏雲 委員; 그러니까 발주방법이 가령 기타공사라든가, 대안입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를 한 대로 하면 실제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기 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형식 때문에 대안입찰로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張夏雲 委員; 그러면 굳이 政府에서 턴키로 다 해야 한다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기술심의를 하면서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政府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단계인 대안입찰을 채택했다는 것은.....

○技術審議官 洪善光; 그렇기 때문에 발주부서가 요구한 대로 다 채택을 한 것입니다.

○張夏雲 委員; 아니, 발주부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발주부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발주부서가

책임질 수가 없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발주부서도 무책임한 발상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굳이 이것은 턴키로 해 봤자 어려움이 많을 것이 뻔한데 그 중간단계인 대안입찰로 하지 말고 그냥 기타공사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技術審議官 洪善光; 대안만 施工社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기타공사와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도 봉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안으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발주부서 자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받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봉쇄할 이유는 없지요.

○張夏雲 委員;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技術審議官이 설명한 정도에서 입찰방식을 턴키로 하는 것을 政府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턴키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입찰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저는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그렇게 하시고, 本委員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를 죽 봤는데 자료내용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建設試驗所長이 한 번도 委員會에 출석을 앓고 있는데 아마 와병중이라고 들었는데 6개월 정도를 현재 우리 委員會에 나와서 답변한다든지, 기타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技術審議官께서 해 주세요.

○技術審議官 洪善光; 建設試驗所長이 금년초에 발령을 받고 바로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계속 병가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말에 명예퇴직신청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전임부서에서의 독직사건 때문에 형사 계류중에 있어서 현재 여기에 나올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곧 새

로운 사람으로 발령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어쨌든간에 建設試驗所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본인이든, 아니면 조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委員會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그 동안 이해를 하면서 왔는데 技術審議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市長이라든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建設試驗所, 또 우리 議會에 와서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魯泰塾 委員;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池龍鎬; 그러면 충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技術審議官 이하 전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공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건설기술 수준향상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시에 있었던 여러 委員님들의 의견을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50分 散會)

○出席委員

朴相根 池龍鎬 成聖鏞 魯泰塾

閔庚燁 閔鍊植 白南善 尹福永

李子源 張夏雲 鄭在天 鄭鎭澤

車星煥

○專門委員

朴勇勳

○出席公務員

技術審議官 洪善光

建設試驗所品質指導課長 朴亨根